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표시의 조정 등〉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65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기준 조정 등	3
2. 에너지관리지도 개선명령 완화 등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0.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 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기준 조정 등

개정안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u>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 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 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 지와 같음)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 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생략)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 14. (생략)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 8. (생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6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4항----- ----- 4. ~ 14. (현행과 같음) 제76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4항----- ----- ----- 3.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8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7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5조제5항-----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제2항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현행법이 효율관리기자재를 지정하여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효율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효율등급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등을 효율관리기자재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등이 기술 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텔레비전수상기의 경우 최신기술이 적용된 고해상도의 OLED 제품 특성상 기존 LED, LCD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게 부여되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²⁾

이에 개정안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를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 등에 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에 따른 소비효율등급부여 기준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이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이미 에너지사용량, 보급량, 기술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을 조정하고 있고, 특히 전기냉장고와 같이 보급량이 매우 커 에너지소비량의 관리가 중요한 9개 품목³⁾은 3년 단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⁴⁾을 사전에 고시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0조⁵⁾에 따라 전체 신고모델 중 고효율 제품비중에 따라 효율기준을 조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를 운용 중이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법상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준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은 기업의 생산·판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⁶⁾

3)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냉난방기, 텔레비전수상기, 제습기 등 9개 품목

4) 제조사에게 고효율 제품 기술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기준 상향 수준(1등급, 5등급 기준과 시기(3년, 6년)를 운용규정에 반영함

5)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0조(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1. 신고모델의 1등급 점유율이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고모델의 1등급과 2등급의 점유율 합계가 해당 품목 전체 신고모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6)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에너지관리지도 개선명령 완화 등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령할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후단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4조(개선명령) ① ----- ----- ----- ----- ----- ----- . 이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3년 이상의 주기로 의무적으로 에너지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⁷⁾을 받도록 하고,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준 이행을 위한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 결과 효율 개선효과가 크고 투자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에너지손실요인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이는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 기준 미달시 효율개선 타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적으로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률적인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에 대한 개선명령이 기업의 투자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개선의 적정성과 투자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화(5년 초과)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의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개선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9)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선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4조(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 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는 개정안이 명시한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의 경제성”의 경우 동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¹⁰⁾에서 3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시 개선명령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동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법 시행령 제40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개선명령 요건을 규정하여 개선의 적정성, 투자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 회수 기간 3년 이내를 개선명령 경제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개선명령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임.

10)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④ 영 제40조제1항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3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3